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,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·통계·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기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63호, 2026. 3. 17. 공포, 2026. 9. 18. 시행)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안전한 민간항공기 항행업무 지원을 위하여 항공기상업무 안전감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36026호, 2026. 1. 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(안 제7조의2 신설)

1)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에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일반현황, 활용하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.

2)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나. 항공 기상업무에 대한 이행상태 점검 근거 마련(안 제11조의2 신설)
기상청장은 항공 기상업무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 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.

다.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명칭을 수치예보센터로 변경함(안 제23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·민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사 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지, 인력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
2. 활용하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 등에 관한 사항
3.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목적 및 분야 등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,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계획 수립과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의 기간·목적·내용 및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·전자

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,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항공기상안전 활동)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, 제7조의4 제2항 및 제14조의2와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에 따른 항공 기상업무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.

별표 5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 제2항제1호	25	35	50
--	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

별표 5 제2호라목(중전의 다목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법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 제2항제2호	25	35	50
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치모델링센터”를 “수치예보센터”로
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
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</u> <u>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기상</u> <u>기후데이터의 공공·민간 활용</u> <u>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</u> <u>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범위는</u>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조사 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</u> <u>지, 인력 등 일반현황에 관한</u> <u>사항</u> <u>2. 활용하는 기상기후데이터의</u> <u>종류 및 수집경로 등에 관한</u> <u>사항</u> <u>3.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목적</u> <u>및 분야 등 활용 현황에 관한</u> <u>사항</u> <u>4.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기</u> <u>후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</u> <u>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</u> <u>정하는 사항</u> <u>②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</u> <u>되,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</u> <u>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계획</u> <u>수립과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</u> <u>른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및 이</u>

<신 설>

제11조의2 (생 략)

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
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의 기간
· 목적 · 내용 및 조사인력 등을
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
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
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
·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
사용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항공기상안전 활동) ①

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, 제7
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2와
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
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
과 권고에 따른 항공 기상업무
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
위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
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
을 대상으로 항공 기상업무 전
반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할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 점검
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
상청장이 정한다.

제11조의3 (현행 제11조의2와 같

제23조(권한의 위임)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<u>수치모델링센터</u>의 장에게 위임한다. 1.·2. (생략) ② ~ ⑦ (생략)	음) 제23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<u>수치예보센터</u>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상청 혁신행정부무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7301